#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8

발의연월일: 2024. 7. 8.

발 의 자:백혜련·부승찬·박지원

황운하 • 이기헌 • 이재정

김영진 • 민홍철 • 김태년

염태영 · 노종면 · 김한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소속 직원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규정이 없음.

이에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으로서 소가(訴價)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 또는 국가위임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수 없음. 설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소속 공무원이 있더라도 「변호사법」 제38조의 공무원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변호사는 휴업하여야 하므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없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로서 법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직원이 있더라도 소송을 위해 반드시 외부 변호사를 수임해야 함에 따라 예산 낭비가 초래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송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수행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 설).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절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소송 수행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25조의2(소송 수행자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해당 지
	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
	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할
	<u>수 있다.</u>